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2년 9월 18일
-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22일
- 라. 상정일자: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22.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차인영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하수법」의 개정(시행 2022. 1. 6.)사항을 반영하여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수질검사 주기 등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출지하수 관리 및 물 순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유출지하수의 이용(안 제3조의2)
 - 유출지하수의 수질검사 등(안 제3조의3)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종란)

○ 본 조례안은

- 「지하수법」의 개정(시행 2022. 1. 6.)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출지하수* 관리 및 물 순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의3에서는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과 환경성 제고 및 지속적인 수질 확보 등을 위하여 수질검사 및 정기수질검사가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의 상황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방안으로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조례의 상위법인 「지하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출지하수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절차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수질검사 주기 등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물 순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
----------	----

발의년월일: 2022년 9월

발의자: 차인영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한 발생현황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이행함으로써 유출지하수 발생 대응에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주기를 설정하여 유출지하수의 안전한 이용과 환경성 제고 및 지속적인 수질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나.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3)

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9. 14. ~ 9. 19.):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맞추어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시행하

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개선을 명할 때에는 이행기간·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주기는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기반으로 하여, 각 이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검사주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장한다.

1. (최초)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
2. (정기) 유출지하수의 경우 지하대수층에서 유출되어 바깥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유출지하수의 수질검사는 3년에 1회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

3.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의 경우에는 연 1회 실시를 권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위원장의”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6. (생략)</p> <p><신설></p>	<p>제1조(목적) ----- ----- <u>시행규칙</u>----- ----- ----- -----.</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현행 제6호와 같음)</p> <p><u>제3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u></p> <p>① <u>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맞추어 규칙으로 정하는</u></p>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공사용·화장실용·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개선을 명할 때에는 이행기간·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개선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

<신 설>

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선 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개선 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3(유출지하수 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출지하수 수질검사주기는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기반으로 하여, 각 이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검사주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장한다.

1. (최초)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 실시
2. (정기) 유출지하수의 경우 지하대수층에서 유출되어 바깥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유출지하수의 수질검사

제5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하수 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생략)
- ② (생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⑤ (생략)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는 3년에 1회를 실시하는 것을 권고

3. 기타용도(하천유지용수)의 경우에는 연 1회 실시를 권고

제5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시행규칙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위원장이 -----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⑧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⑦·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규칙) -----
-- 필요한 -----
-----.